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173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권영세·이성권·김소희

김재섭 · 서일준 · 고동진

안철수 · 구자근 · 김승수

강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미가입한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자동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 차보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 등에 미가입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보험 등에 가입을 유도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 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수상레저활 동자의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제 61조제8호 및 제62조제4호 각각 신설).

법률 제 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종 등의 금지) 등록 대상 동력수 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는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 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수상레저사업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6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수상레저사 업을 한 자

제6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동력수상레 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4조의2(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종 등의 금지)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는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동력수상레 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수상레저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벌칙)
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신 설>	